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39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강경숙·서왕진·신장식

김선민 · 김재원 · 황운하

정춘생・김준형・차규근

이해민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 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 및 역할) ① 국가 및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하 이 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부배치에 대해서는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의 배 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치 및 역할) ① 국가 및 교육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 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학교폭력 업 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 ②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부배치 에 대해서는 학생수 등을 고려 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 의하여 정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 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 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 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 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

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